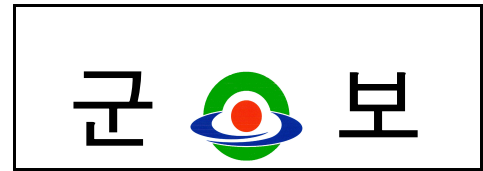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83호 2019. 8. 12.(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9-924호)
-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9-925호)
- 보상계획 열람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9-927호)
-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929호)
- 예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93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중로1-2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예 천 군 수

1. 군계획시설(도로)사업 현황

○사업의 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43-6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대심 변전소뒤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 개설공사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368.0m, B=20.0m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천군수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

임 조서와 같음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9. 08. 12. ~ 2019. 08. 26.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54-650-6949)
- 관계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이월권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	예천	대심	743-6	743-6	도	136	64	국	국토교통부			
2	예천	대심	743-2	743-2	도	116	16	국	국토교통부			
3	예천	대심	850	850	도	3,501	32	국	국토교통부			
4	예천	대심	743-13	전필	잡	556	556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길 33	김○호			
5	예천	대심	743-1	743-14	답	2,780	156	경북 영주시 영주로 189번길 15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09동 902호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09동 902호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93-8, 303동 703호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93-8, 303동 703호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93-8, 303동 703호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93-8, 303동 703호	이○룡 이○규 이○규 전○희 이○규 이○림 이○후	근저당권 지상권	영주농협 협동조합	지분 6/27 지분 6/27 지분 6/27 지분 3/27 지분 2/27 지분 2/27 지분 2/27
6	예천	대심	743-3	743-15	도	182	11	경북 영주시 영주2동 546-11 경북 영주시 영주2동 546-11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9-902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9-902	이○웅 이○룡 이○규 이○규			지분 2/6 지분 2/6 지분 1/6 지분 1/6
7	예천	대심	744-8	744-9	답	330	2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66길 20 104동 2201호 (반월당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정○섭			
8	예천	대심	736-1	736-6	임	9,456	23	부산시사하구낙동대로549번길29 101동 1103호 (청목미르피아아파트)	홍○임	근저당권 지상권	고아농협 협동조합	
9	예천	대심	736-1	736-7	임	9,456	245	부산시사하구낙동대로549번길29 101동 1103호 (청목미르피아아파트)	홍○임	근저당권 지상권	고아농협 협동조합	
10	예천	대심	873	873	구	10,354	954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예천	대심	736-3	736-8	전	488	329	부산시사하구낙동대로549번길29 101동 1103호 (청목미르피아아파트)	홍○임	근저당권 지상권	고아농협 협동조합	
12	예천	대심	745	745-2	답	2,116	916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동 819	정○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계속)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 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13	예천	대심	746-1	746-8	답	3,252	6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47-1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47-1	백○흙 김○례			지분 1/2 지분 1/2
14	예천	대심	674	674-3	답	3,451	1,398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동 823 경북 예천군 예천읍 흑응로 51-9	김○영 서○숙		예천농협 협동조합	지분 414/1044 지분 630/1044
15	예천	대심	675	675-2	답	2,103	954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52길 55, 102동 706호 (범어동일하이빌)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52길 55, 102동 706호 (범어동일하이빌)	박○홍 손○자		고아농 협동조합	지분 1/2 지분 1/2
16	예천	대심	676	676-2	답	2,979	1,34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830-2	장○식			
17	예천	대심	678	678-3	답	1,346	1,285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74번길 30, 103동 1304호 (경동메르빌아파트)	김○우	가압류 근저당권	아주캐피탈(주) 양○선	
18	예천	대심	677	677-2	답	843	26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동 71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동 712	전○랑 전○수			지분 1/2 지분 1/2
19	예천	대심	679	679-1	답	698	331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74번길 30, 103동 1304호 (경동메르빌아파트)	김○우	가압류 근저당권	아주캐피탈(주) 양○선	
20	예천	대심	680-1	680-3	답	2,566	91	경북 안동시 옥동4길 66-5, 101동 102호 (옥동, 피카소레드)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438, 104동 1503호 (옥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장○진 신○경		안동농 업협동 조합	지분 1/2 지분 1/2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조서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종류	구분	조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관계인 (토지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예천	대심	850	표지판	편지식		1.0	EA		예천군		국토교통부	
			850	표지판	단주식		3.0	EA					
2	예천	대심	873	소화전			1.0	EA		예천군		농림축산식품부	
			873	제수변			1.0	EA					
			873	맨홀	오수(D648)		1.0	EA					
3	예천	대심	674	오염정화시설	D600		1.0	식		예천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동 823	김○영 외 1인	
4	예천	대심	677	관정	농업용수용		1.0	식		예천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동 712	전○량 외 1인	
5	예천	대심	743-5	창고1	컨테이너		8.0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43-5번지 (차이나타운)	김○모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43-5번지 (차이나타운)	김○모	
				창고2	샌드위치판넬		10.3	㎡					
				창고3	목조PC골판		18.0	㎡					
				실외기	냉동창고용		2.0	EA					
				테라스	목조		34.0	㎡					
6	예천	대심	743-1, 873	창고	컨테이너		18.0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43-5번지 (예천하우징)	조○욱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43-5번지 (예천하우징)	조○욱	
			743-1	웬스	스틸골조		14.0	m					
7	예천	대심	736-1	방1	블록조		5.3	㎡			부산시사하구낙동대로549번길29 101동 1103호 (청록미르피아아파트)	홍○임	
				방2	블록조		6.9	㎡					
				주방	블록조		7.0	㎡					
				보일러실	블록조		4.9	㎡					
				차마	블록조		10.1	㎡					
8	예천	대심	737-5, 736-1	창고	블록조		4.3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7-5	유○청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7-5	유○청	
				장독대	콘크리트		4.0	㎡					
				담장	블록조		13.0	m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조서 (계속)

이전지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종류	구획구조격	수량및면적	단위	소 유 권 자		관 계 인 (토지소유자)		비고
	이전지번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9	예천	대심	736-1	방1	블록조이슬레이트	12.6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효로 71-12	김○기 (세입자)	부산시사하구낙동대로549번길29 101동1103호 (청목미르피아아파트)	홍○임	
			방2	블록조이슬레이트	8.37	㎡	부산시 거주		이○화 (소유자)			
			방3	블록조이슬레이트	14.6 ₁	㎡						
			창고1	경량철구조슬레이트	44.9 ₂	㎡						
			창고2	블록조이슬레이트	4.2	㎡						
			창고3	드워넬새치판조	7.2	㎡						
			창고4	블록조이슬레이트	10.7 ₅	㎡						
			창고5	경량철구조석	13.2 ₆	㎡						
			화장실	블록조이슬레이트	4.6	㎡						
			보일러실	블록조이슬레이트	3.22	㎡						
			주방	블록조이슬레이트	11.1 ₈	㎡						
			다용도실	블록조이슬레이트	15.8 ₆	㎡						
			담장	블록조	2.4	m						
			싱크대		1.8	㎡						
			에어컨	실외기	1	식						
			수도전		1	식						
			감나무	R30	1	주						
			소나무	R30	4	주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중로1-10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예 천 군 수

1. 군계획시설(도로)사업 현황

○사업의 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21-15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대심 이미기길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 개설공사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480.0m, B=20.0m

- 중로1-10호(L=160.0m), 중로1-11호(L=160.0m), 중로1-3호(L=160.0m)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천군수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와 같음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9. 08. 12. ~ 2019. 08. 26.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54-650-6949)
- 관계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중로1-10호>												
1	예천	대심	721-15	721-15	도	158	17	공유지	예천군			
2	예천	대심	721-10	721-21	대	188	14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74	장○해			
3	예천	대심	721-1	721-20	답	718	287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625-16	박○호	근저당권 지상권	예천농 업협동 조합	
4	예천	대심	720-20	720-20	도	3,059	549	공유지	예천군			
5	예천	대심	866	866	구	25,736	450	국유지	농림축 산식품 부			
6	예천	대심	700-2	700-3	전	231	127	경남 김해시 삼정동 665-2, 상가그린빌라 202호	이○순			
7	예천	대심	688	688-4	잡	12,979	36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 력공사			
8	예천	대심	699	699-3	전	1,628	8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41, 710호(백석동, 윈스턴파크2차)	권○숙			지분 1/3
	예천	대심	699	699-3	전	1,628	8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41, 710호(백석동, 윈스턴파크2차)	김○훈			지분 1/3
	예천	대심	699	699-3	전	1,628	8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41, 710호(백석동, 윈스턴파크2차)	김○동			지분 1/3
9	예천	대심	687	687-2	전	2,562	365	경북 안동시 중평길 39, 106동 1101호(용상동, 안동세영리첼아파트)	황○숙	근저당 권 지상권	대구경 북농업 협동 조합	지분 1/3
	예천	대심	687	687-2	전	2,562	365	경북 안동시 전거리6길 8, (용상동)	권○주			지분 1/3
	예천	대심	687	687-2	전	2,562	365	대구시 동구 팔공로30길 15, (볼로동)	황○규			지분 1/3
10	예천	대심	873	873	구	10,354	451	국유지	농림축 산식품 부			
11	예천	대심	677	677-2	답	843	26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12	전○수			지분 1/2
	예천	대심	677	677-2	답	843	26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12	전○랑			지분 1/2
<중로1-3호>												
1	예천	대심	704-16	704-16	도	1,033	150	공유지	예천군			
2	예천	대심	704-13	704-13	도	783	73	공유지	예천군			
3	예천	대심	866	866	구	25,736	121	국유지	농림축 산식품 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계속)

지번 소재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4	예천	대심	641	641-2	답	1,435	491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무리실길 33-9	임○자	근저당권 근저당 권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리아(유) 락실코 리아(유))	
5	예천	대심	642-4	642-19	답	2,601	84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09	백○수			
6	예천	대심	642-5	642-20	답	661	30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300	정○숙			지분 165/6 61
	예천	대심	642-5	642-20	답	661	3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29-4, 동백아파트 102-611	유○용			지분 165/ 661
	예천	대심	642-5	642-20	답	661	30	경남 창원시 남양동 20, 성원1차아파트 108-1106	조○정			지분 331/6 61
7	예천	대심	642-3	642-17	답	496	71	경남 창원시 성주동 153, 유니온빌리지 116-1003	민○숙			
8	예천	대심	642-1	642-16	답	1,421	433	서울시 성동구 성내동 434-26	최○숙			
9	예천	대심	866	866	구	25,736	101	국유지	농림축 산식품 부			
10	예천	대심	660	660-2	전	1,904	255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무리실길 37-2	황○분			
11	예천	대심	661	661-3	전	1,104	29	경북 안동시 강남5길 112, 204동 1007호 (정하동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주○연	근저당권 지상권	대구경북 농금농업 협동조합	지분 2/3
	예천	대심	661	661-3	전	1,104	29	경북 안동시 축제장2길 34, (운흥동)	김○영			지분 1/3
12	예천	대심	662-4	662-8	답	330	174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1, 121동 1302호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센트럴 파크)	윤○숙			지분 1/2
	예천	대심	662-4	662-8	답	330	174	대구시 북구 동북로 163, 108동906호(산격동, 산격대우아파트)	서○연			지분 1/2
13	예천	대심	662-5	662-9	답	396	197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 4길 39, 101동 601호(진천동, 진천우방맨션)	박○미	근저당권	예천군새 마을금고	지분 1/2
	예천	대심	662-5	662-9	답	396	197	대구시 북구 복현로 115, 102동603호(복현동, 현대아파트)	석○환			지분 1/2
14	예천	대심	662-3	662-7	답	495	274	제주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 106동 902호(노형동,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오○현	근저당 권	예천군 새마을 금고	
<중로1-11호>												
1	예천	대심	688-2	688-2	도	189	32	공유지	예천군			
2	예천	대심	688-3	688-3	잡	637	637	공유지	예천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계속)

지번 지번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3	예천	대심	693-2	693-2	답	431	431	공유지	예천군			
4	예천	대심	693-3	693-3	대	257	211	공유지	예천군			
5	예천	대심	872-1	872-1	도	160	34	국유지	국토교통부			
6	예천	대심	691-1	691-2	전	2,924	48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무리실길 37-1	장○남			
7	예천	대심	689-3	689-3	전	480	480	공유지	예천군			
8	예천	대심	736-5	736-5	전	7	7	공유지	예천군			
9	예천	대심	736-4	736-4	임	199	199	공유지	예천군			
10	예천	대심	873	873	구	10,354	252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대심 이미기길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예 천 군 수

1. 사 업 명 : 대심 이미기길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3. 사 업 기 간 : 2019년 ~ 2021년
4. 사 업 개 요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의 위치	비 고
도 로	대심 이미기길 도시계획도로 (중로1-10호) 개설공사	- 도로개설(중로1-10호) L=160.0m, B=20.0m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일원	
		- 도로개설(중로1-3호) L=160.0m, B=20.0m		
		- 도로개설(중로1-11호) L=160.0m, B=20.0m		

※ 세부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참조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9.08.12.부터 ~ 2019.08.26.까지(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

다. 열람내용 :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붙임)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붙임양식)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9~10월중 개별통지예정)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합니다.

나. 단,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
(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

라.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내역,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금 지급

가.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예천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등)는 해지 후 계약체결

나.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10.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 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도시과(☎054-650-6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중로1-10호>												
1	예천	대심	721-15	721-15	도	158	17	공유지	예천군			
2	예천	대심	721-10	721-21	대	188	14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74	장인해			
3	예천	대심	721-1	721-20	답	718	287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625-16	박○호	근저당권 지상권	예천농 업협동 조합	
4	예천	대심	720-20	720-20	도	3,059	549	공유지	예천군			
5	예천	대심	866	866	구	25,736	450	국유지	농림축 산식품 부			
6	예천	대심	700-2	700-3	전	231	127	경남 김해시 삼정동 665-2, 상가그린빌라 202호	이○순			
7	예천	대심	688	688-4	잡	12,979	36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 력공사			
8	예천	대심	699	699-3	전	1,628	8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41, 710호(백석동, 윈스턴파크2차)	권○숙			지분 1/3
	예천	대심	699	699-3	전	1,628	8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41, 710호(백석동, 윈스턴파크2차)	김○훈			지분 1/3
	예천	대심	699	699-3	전	1,628	8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41, 710호(백석동, 윈스턴파크2차)	김○동			지분 1/3
9	예천	대심	687	687-2	전	2,562	365	경북 안동시 중평길 39, 106동 1101호(용상동, 안동세영리첼아파트)	황○숙	근저당 권 지상권	대구경 북농 업협 동조 합	지분 1/3
	예천	대심	687	687-2	전	2,562	365	경북 안동시 전거리6길 8, (용상동)	권○주			지분 1/3
	예천	대심	687	687-2	전	2,562	365	대구시 동구 팔공로30길 15, (볼로동)	황○규			지분 1/3
10	예천	대심	873	873	구	10,354	451	국유지	농림축 산식품 부			
11	예천	대심	677	677-2	답	843	26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12	전○수			지분 1/2
	예천	대심	677	677-2	답	843	26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12	전○랑			지분 1/2
<중로1-3호>												
1	예천	대심	704-16	704-16	도	1,033	150	공유지	예천군			
2	예천	대심	704-13	704-13	도	783	73	공유지	예천군			
3	예천	대심	866	866	구	25,736	121	국유지	농림축 산식품 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계속)

이전지번(이하)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4	예천	대심	641	641-2	답	1,435	491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무리실길 33-9	임○자	근저당권 근저당권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리아(유) 락실코 리아(유)	
5	예천	대심	642-4	642-19	답	2,601	84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09	백○수			
6	예천	대심	642-5	642-20	답	661	30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300	정○숙			지분 165/6 61
	예천	대심	642-5	642-20	답	661	3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29-4, 동백아파트 102-611	유○용			지분 165/ 661
	예천	대심	642-5	642-20	답	661	30	경남 창원시 남양동 20, 성원1차아파트 108-1106	조○정			지분 331/6 61
7	예천	대심	642-3	642-17	답	496	71	경남 창원시 성주동 153, 유니온빌리지 116-1003	민○숙			
8	예천	대심	642-1	642-16	답	1,421	433	서울시 성동구 성내동 434-26	최○숙			
9	예천	대심	866	866	구	25,736	101	국유지	농림축 산식품 부			
10	예천	대심	660	660-2	전	1,904	255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무리실길 37-2	황○분			
11	예천	대심	661	661-3	전	1,104	29	경북 안동시 강남5길 112, 204동 1007호 (정하동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주○연	근저당권 지상권	대구경북 농금농업 협동조합	지분 2/3
	예천	대심	661	661-3	전	1,104	29	경북 안동시 축제장2길 34, (운흥동)	김○영			지분 1/3
12	예천	대심	662-4	662-8	답	330	174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1, 121동 1302호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센트럴 파크)	윤○숙			지분 1/2
	예천	대심	662-4	662-8	답	330	174	대구시 북구 동북로 163, 108동906호(산격동, 산격대우아파트)	서○연			지분 1/2
13	예천	대심	662-5	662-9	답	396	197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 4길 39, 101동 601호(진천동, 진천우방맨션)	박○미	근저당권	예천군새 마을금고	지분 1/2
	예천	대심	662-5	662-9	답	396	197	대구시 북구 복현로 115, 102동603호(복현동, 현대아파트)	석○환			지분 1/2
14	예천	대심	662-3	662-7	답	495	274	제주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 106동 902호(노형동,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오○현	근저당 권	예천군 새마을 금고	
<중로 1-11호>												
1	예천	대심	688-2	688-2	도	189	32	공유지	예천군			
2	예천	대심	688-3	688-3	잡	637	637	공유지	예천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계속)

지번 지번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3	예천	대심	693-2	693-2	답	431	431	공유지	예천군			
4	예천	대심	693-3	693-3	대	257	211	공유지	예천군			
5	예천	대심	872-1	872-1	도	160	34	국유지	국토교통부			
6	예천	대심	691-1	691-2	전	2,924	48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무리실길 37-1	장○남			
7	예천	대심	689-3	689-3	전	480	480	공유지	예천군			
8	예천	대심	736-5	736-5	전	7	7	공유지	예천군			
9	예천	대심	736-4	736-4	임	199	199	공유지	예천군			
10	예천	대심	873	873	구	10,354	252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8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신활력플러스 사업 목적, 사용용어 정의, 사업범위, 군수의 책무 다른 법

령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5조)

나.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비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다.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안 제13조 ~ 제17조)

라.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19조)

3.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19조4, 제31조, 제38조,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추진단 사무국장 및 사무장 인건비(172,000,000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 예고 시에는 미기재, 심의 의뢰 시 기재

바.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첨부

사. 성별영향평가 : 검토의견 반영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곤충연구소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chonr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예천군 곤충연구소(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 전화 054-650-6468, 팩스 054-652-5876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곤충 연구 인프라 구축, 곤충생태원 및 곤충관련 축제 활성화, 곤충산업 중
사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
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도시
재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 앵커기업유치, 민간활
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
고, 추진단이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추진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중
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
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
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
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 사업을 위하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화 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

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 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

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천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내 용 : 신활력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및 사무장 인건비

나. 관련조문 : 제9조 ④항 추진단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진단 사무국장 및 사무장 각 1명 3년간 인건비 지급

나. 사무국장 및 사무장 초임 금액은 아래 사례를 최소 기준으로 적용

- 사무국장 :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농특) 사업(사무장, 월 250만원)

- 사무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고용노동부 결정 최저임금 수준, 월 180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항 목	인원 수	월 급여	지급 개월	소요예산
사무국장	1	250만원	40개월	100,000,000원
사무장	1	180만원	40개월	72,000,000원
계				172,000,000원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도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7,2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72,000,000
민간						
기타						
합계						

5. 부대의견

6. 작성자 : 곤충연구소장 행정5급 박덕영(054-650-6466)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세입	○					
	소계(a)					
세출	○사무국장	1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0
	○사무장	7,2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72,000,000
	소계(b)	17,2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72,000,000
□ 총 비용(a-b)		△17,2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72,000,000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토지분할 및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 용도지역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안 제18조)

- 경사도 기준 변경

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안 제23조)

-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및 신청서류 규정 마련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조례로 정함
 - 신청서 구비서류 규정 마련

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안 제24조의2)

-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변경내용

- 주거지·도로·농지에서의 이격거리 및 경사도 등 입지 기준 변경
- 건축물 위 설치 등 입지 기준 변경
- 풍력발전시설 입지 기준 마련 등

라.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 변경(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31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명칭변경
제32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3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4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6조	전통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8조	경관지구 건폐율	경관지구 건폐율	세부 지구 변경
제39조	경관지구 높이	경관지구 높이	세분 지구 변경
제40조	경관지구 규모	경관지구 규모	세분 지구 변경
제41조	경관지구 조경	경관지구 조경	세분 지구 변경
제42조	미관지구	조항 삭제	
제43조	미관지구 공지	조항 삭제	
제44조	미관지구 높이	조항 삭제	
제45조	미관지구 형태	조항 삭제	
제46조	미관지구 부속시설	조항 삭제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명칭 변경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명칭 변경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조항 삭제	
제5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조항 삭제	
제51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조항 삭제	
제52조	농·수산업지구	조항 삭제	

마. 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공장 증축 완화(안 제59조의2)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2020년까지 한시적 완화

바.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입지 완화(안 별표 6, 7, 8, 9, 10, 21)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가능

3.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84조의2, 부칙(2017. 12.29.), 별표 1의2
-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6조부터 제9조까지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도시과(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054-650-6346 팩스 054-650-6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토지분할 및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 용도지구의 통·폐합, 명칭 변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반영,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안 제18조)

- 경사도 기준 변경

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 (안 제23조)

-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및 신청서류 규정 마련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조례로 정함
 - 신청서 구비서류 규정 마련

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 (안 제24조의2)

-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변경내용
 - 주거지·도로에서의 이격거리 및 경사도 등 입지 기준 변경
 - 건축물 위 설치 등 입지 기준 변경
 - 풍력발전시설 입지 기준 마련 등

라.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 변경(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52

조까지)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31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명칭변경
제32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3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4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6조	전통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8조	경관지구 건폐율	경관지구 건폐율	세부 지구 변경
제39조	경관지구 높이	경관지구 높이	세분 지구 변경
제40조	경관지구 규모	경관지구 규모	세분 지구 변경
제41조	경관지구 조경	경관지구 조경	세분 지구 변경
제42조	미관지구	조항 삭제	
제43조	미관지구 공지	조항 삭제	
제44조	미관지구 높이	조항 삭제	
제45조	미관지구 형태	조항 삭제	
제46조	미관지구 부속시설	조항 삭제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명칭 변경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명칭 변경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조항 삭제	
제5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조항 삭제	
제51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조항 삭제	
제52조	농·수산업지구	조항 삭제	

마. 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공장 증축 완화 (안 제59조의2)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2020년까지 한시적 완화

바.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입지 완화(안 별표 6 ~ 10, 별표 21)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가능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84조의 2, 부칙(2017. 12.29.), 별표 1의2

○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관리는 법 제3조”를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상지안”을 “대상지 안”으로 한다.

제7조 중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제4호나목 중 “지구단위계획외”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호에”를 “별표 1의2 제1호에”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生物種)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제18조제8호 중 “경사도가 30도”를 각각 “평균경사도가 25도”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지방”을 “지반”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전단 중 “「먹는 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을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토지분할 허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별표 2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서 1부.
2. 분할측량성과도 1부.

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 1부.

가. 매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

나.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 분할계약서(동의서)

다.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라. 교환의 경우 : 교환계약서

마. 판결의 경우 : 판결문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철도"란 법 제43조에 따라 준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5. "10호 이상의 주거지"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7.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1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18조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사도 15도 초과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

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하 “해당 건축물”이라 한다)의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해당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대지가 있는 경우(신청인 본인 소유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을 경우

⑤ 3년 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 이상 소유(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⑥ 제5항 단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⑦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병원,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미터(10호 미만의 경우 1,0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를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를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3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9조의2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62조제4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를 “「규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건축도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113조제5항”을 “법 제1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영 제 113조의2 제1항”을 “영 제113조의2”로 한다.

제71조 중 “도시계획업무담당 주사가”를 “도시계획팀장이”로 한다.

제75조의5 제4항 중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예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를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의7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예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이”을 “「지방공무원법」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 차목(3), (4) 및 카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호다목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별표 6 제1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

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제1호바목”을 “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가축시설”을 “가축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 제1호마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사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제1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중 제1호사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2호차목(2)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로 한다.

별표 18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자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자목, 같은 목 (1),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2),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호 자목(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 공급시설

별표 22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각 호 외의 본문 및 각 호 외 주 4) 중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를 “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로 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는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당시의 사업대상지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u>시행규칙</u>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u>관리</u> 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 ----- <u>관리</u>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생략) 1. (생략) 2. <u>대상지</u>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대상지</u>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	제7조(주민의견 청취) -----

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북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략)
4. 토석채취
 - 가. (생략)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

 -----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 3.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
 - 가. (현행과 같음)
 - 나. -----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
하의 토석채취

5. ~ 6. (생 략)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의 별표 1의2호
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
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 보호야생 동·식물, 국
제적 멸종 위기종 등이 자생
하지 않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외의
지역

4. ~ 7. (생 략)

8.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
가 3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
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 별표 1의2
제1호에 -----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
제적 멸종위기종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生物種) 다양
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
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4. ~ 7. (현행과 같음)

8. 평균경사도가 25도 -----

----- 평균경
사도가 25도 -----

거쳐 허가할 수 있다.

9. ~ 10. (생략)

제19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
치 기준)

① ~ ② (생략)

③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배수시
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
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
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
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
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
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4. (생략)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
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

9. ~ 10.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
치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 지반 -----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
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

1. -----

----- 「먹는 물 관리법」 -----

----- 「하수도 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

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 3. (생략)

제23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①
(생략)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
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

2. ~ 3.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분할 허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6 -----

③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서 1부.

2. 분할측량성과도 1부.

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 1부.

가. 매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

나.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 분할계약서(동의서)

다.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라. 교환의 경우 : 교환계약서
마. 판결의 경우 : 판결문

제24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철도"란 법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5.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개발행위허가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철도"란 법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5. "10호 이상의 주거지"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7.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7.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10호 미만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각 주택부지경계에서 1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한다.

4.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1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18조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사도 15도 초과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에 따른 발전시설의 설치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치하여야 하며,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수 있다.

설치하는 경우. 다만,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하 “해당 건축물”이라 한다)의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해당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대지가 있는 경우(신청인 본인 소유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을 경우

⑤ 3년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이상 소유(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⑥ 제5항 단서는 개발행위 준공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⑦ 3년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이상 소유(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 포함)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개발행위 준공된 발전시설은 이격거리 산정 제외)

된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병원,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1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4. (생략)

제32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미터(10호 미만의 경우 1,0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자연경관지구 -----
--- -----

1.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

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

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

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

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

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

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

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

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
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
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 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
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
1항에 따라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

<삭 제>

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

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

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

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

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삭 제>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

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
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
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

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

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

호의 창고시설로 해당용도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
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
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
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은 제외한다)

5. ~ 7. (생 략)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
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
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목,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의 건축제한) -----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7. (현행과 같음)

<삭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
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

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

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

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

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

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

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
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
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자연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자

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 어느 하나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6. <신 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 5. <삭 제>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 특화경관지구 -----

<삭 제>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

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

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

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
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

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

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

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

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
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
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
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삭 제>

경우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 담장 · 대문의 양식 · 구조 · 형태 ·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 장독대 ·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 환

<삭 제>

<삭 제>

<삭 제>

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
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
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4. (생 략)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
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
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 략)

<신 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

1. ~ 14. (현행과 같음)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
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
조제2호----- 중요시설물보호
지구 -----
-----.

1. ~ 15. (현행과 같음)

②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관리
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
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
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
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
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
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
호의 방송통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
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
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삭 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

<삭 제>

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
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
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
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

<삭 제>

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
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
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

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에 한정한다)

제52조(농·수산업지구 안에서
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 이
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
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
에 한정한다)

제55조(기타 용도지역·구역 등
의 건폐율) ① ~ ② (생략)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삭 제>

제55조(기타 용도지역·구역 등
의 건폐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 제2조제7호-----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 ② (생략)

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건폐율의 완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020년
12월 31일-----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 의무

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62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 ③ (생략)

④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
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8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
군수 및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1.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2. 영 제1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생 략)

제7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5조의5(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
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교통

**제68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도시과장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법 제113조제1항 -----

2. 영 제113조의2 -----

⑦ (현행과 같음)

제71조(간사) -----

----- 도시계획팀장이 -

제75조의5(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공무
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
정」 및 「예천군지방계약직공
무원규정시행규칙」에 따른 계
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생 략)

제75조의7(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
정」 및 「예천군 지방계약직공
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
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의7(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법」 및 「예
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

<삭 제>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
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
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
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계
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
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
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

장·도계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에 따른다.

- (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2) 봉제의복 제조업(141)
- (3) 편조의복 제조업(143)
- (4)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263)
- (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
- (6) 세탁업(9691)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

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사. 제1호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8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다. 제1호 나목 단서의 “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라 함은 90퍼센트를 말한다.

라. 제1호 다목(1), (2) 및 라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
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 나. 제1호 가목(1), (2) 및 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
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

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제1호 나목(1), (2) 및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

나. 제1호 라목(1), (2) 및 마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
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
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

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 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
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내성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호수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별표 26】

토지분할 허가기준

1.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하여 광고 등을 통해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려는 자(재분할의 경우 재분할 전 지적 기준)

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적용범위) 법, 령, 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별표에 따른다.

가.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업자 등을 포함한다)”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용도지역 별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2)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3) 계획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4)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5) 임야의 경우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

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라.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4필지 이하여야 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야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 제1항 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3. 삭제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라.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 · 도 또는 대도시

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 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 일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부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9조, 제94조 및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미관지구	경관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1. 시가지경관지구
2. 일반미관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2. 특화경관지구

제4조(최고고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보존지구	보호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3. 생태계보호지구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1. 중요시설물보호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	
3. 공항시설보호지구	
4. 학교시설보호지구	2. 특정용도제한지구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

	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 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정,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설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숯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흠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

	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 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용 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 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 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 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제6조(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려는 자(재분할의 경우 재분할 전 지적 기준)
2.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제7조(토지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별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녹지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나.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다. 계획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마. 임야의 경우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3.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4.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4필지 이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야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7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적용제외)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제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